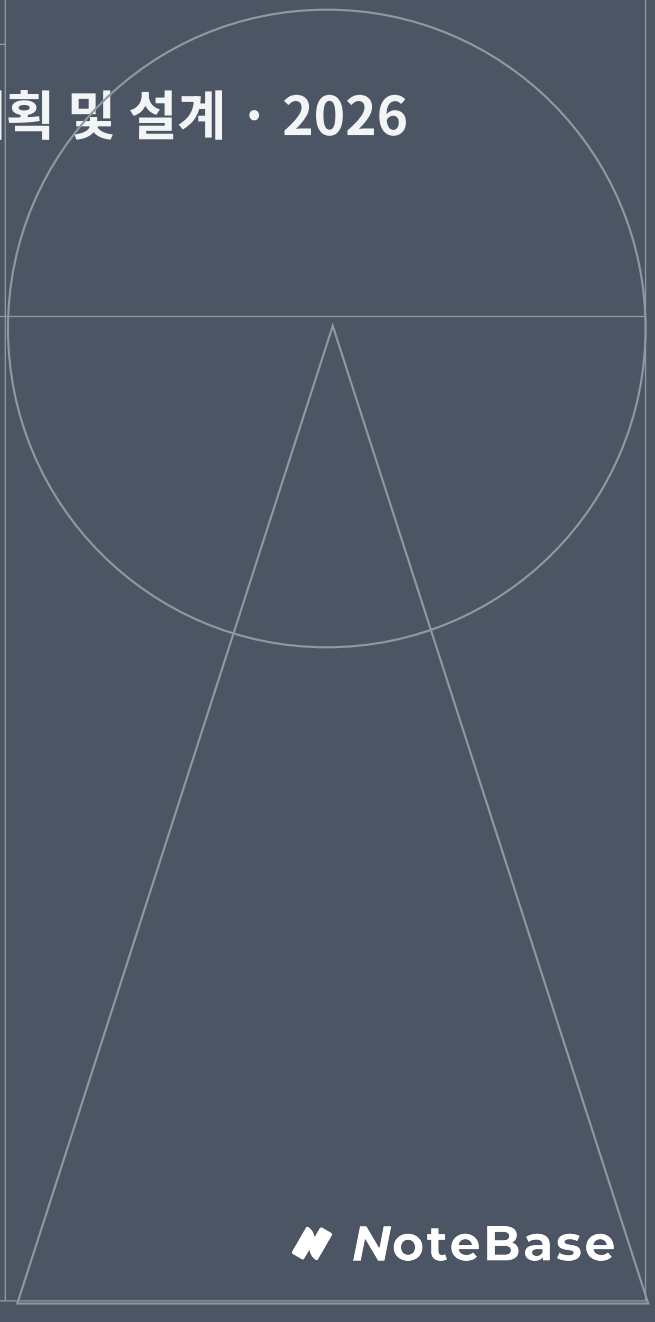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6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6

문 1. 상록침엽수가 아닌 것은?

① Ginkgo biloba L.

② Pinus strobus L.

③ Thuja orientalis L.

④ Taxus cuspidata S. et Z.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Ginkgo biloba L.는 은행나무로, 가을에 잎이 노랗게 변한 뒤 떨어지는 **낙엽성 수목**이다. 따라서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상록침엽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Ginkgo biloba L.는 은행나무이다. 부채 모양의 잎이 가을에 노랗게 변한 뒤 떨어지므로 **상록성이 아니라 낙엽성**이다. 따라서 상록침엽수로 분류할 수 없다.

② O: Pinus strobus L.는 스트로브잣나무로, 소나무과의 상록침엽수이다. 가늘고 부드러운 **바늘잎이 5개씩 모여 나며**,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한다.

③ O: Thuja orientalis L.는 측백나무로, 측백나무과의 상록침엽수이다. 잎은 길쭉한 바늘 모양이 아니라 **비늘 모양**으로 작은 가지에 붙어 있다. 침엽수에는 이런 비늘잎을 가진 수종도 포함된다.

④ O: Taxus cuspidata S. et Z.는 주목으로, 주목과의 상록침엽수이다. 잎은 **가늘고 납작한 선형**이며, 겨울에도 잎을 유지한다.

NoteBase

문 2. 부분적인 공간장식을 위한 조경설계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난색(따뜻한 색채)계통은 조망자의 시선을 끌어들인다.

② 고운 질감은 거리가 멀어지는 경관효과가 있다.

③ 식물재료는 공간 내의 여러 요소를 통일, 결합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④ 광장에 서 있거나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바닥포장 패턴을 구성해간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식물재료는 공간의 여러 요소를 **통일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슷한 형태·색채·질감의 식물을 반복하여 배치하면 서로 떨어진 시설과 공간에도 시각적 연속성을 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빨강·주황·노랑 같은 난색은 시각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진출 효과**가 있다. 주변과 대비되도록 사용하면 눈에 잘 띄므로 강조할 지점으로 조망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다.

② O: 고운 질감은 작은 잎이나 가는 가지처럼 섬세한 요소가 만드는 시각적 표면 특성이다. 거친 질감보다 시각적 무게가 작고 뒤로 물러나 보이는 **후퇴 효과**가 있어, 거리가 더 멀고 공간이 넓게 느껴지도록 한다.

③ X: 식물재료는 공간의 여러 요소를 **통일·결합할 수 있다**. 비슷한 형태·색채·질감의 식물을 반복하거나 연속적으로 배치하면 건축물·보행로·시설물 사이에 공통된 시각적 특성이 생겨 전체가 하나의 경관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통일, 결합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을 '통일, 결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바닥포장은 **지상과 높은 곳에서 보는 시점**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한다. 광장에 서 있을 때는 가까운 포장재의 질감과 색채, 패턴의 일부가 두드러지고,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볼 때는 전체 패턴의 형태와 배치가 잘 드러난다. 두 시점에서 모두 의도한 경관효과가 나타나도록 패턴을 구성해야 한다.

NoteBase

문 3.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①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②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③ 가야고분군

④ 반구천의 암각화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형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자연유산**이다. 인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과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각 선지의 O/X는 세계문화유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① O: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한국 불교의 수행과 생활 전통을 이어 온 일곱 산지 사찰로 구성된 문화유산이다. 산속에 있다는 위치보다 **사찰의 공간 구성과 불교문화 전통**이 유산의 성격을 결정한다.

② X: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문화유산이 아니라 **자연유산**이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포함되며, 화산 지형의 경관과 지구의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지질학적 가치가 등재 근거이다.

③ O: '가야고분군'은 가야의 무덤 유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유산이다. **무덤의 형태와 부장품** 등이 가야의 장례문화와 사회·정치 체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인류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인정된다.

④ O: '반구천의 암각화'는 대곡리와 천전리의 바위에 새겨진 그림 등을 포함하는 문화유산이다. 바위라는 자연물 자체보다 **사람이 새긴 표현과 그 문화적 의미**가 핵심 가치이므로 자연유산과 구분한다.

NoteBase

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경우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① 건축물의 용도제한
② 건축물의 실내계획
③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④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정답 2번

①

지구단위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뿐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제한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21.1.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 산 ·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oteBase

②

지구단위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높이한도이다. **건축물의 실내계획은 의무적 포함사항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21.1.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 산 ·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oteBase

③

지구단위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뿐 아니라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21.1.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 산 ·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oteBase

④

지구단위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뿐 아니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21.1.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 산 ·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oteBase

문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어린이공원
② 소공원
③ 체육공원
④ 근린공원

정답 3번

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생활권공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②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는 **생활권공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③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주제공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NoteBase

④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나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생활권공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NoteBase

문 6. 홀(Edward Hall)이 주장한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과 거리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친밀한 거리 - 0 ~ 70 cm

② 개인적 거리 - 45 ~ 120 cm

③ 사회적 거리 - 80 ~ 400 cm

④ 공적 거리 - 300 cm 이상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홀의 **개인적 거리**는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 대화할 때 유지하는 거리로, 약 **45~120 cm**이다. 신체 접촉이 가능한 친밀한 거리보다 멀고, 공식적인 만남에 쓰이는 사회적 거리보다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친밀한 거리는 포옹이나 신체 접촉처럼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 사용하는 거리로, 약 **0~45 cm**이다. 70 cm는 개인적 거리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친밀한 거리의 상한을 70 cm로 연결한 것은 잘못이다.

② O: 개인적 거리는 약 **45~120 cm**로,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거리이다. 친밀한 거리의 바깥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거리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범위에 해당한다.

③ X: 사회적 거리는 업무나 공식적인 대인 접촉에서 사용하는 거리로, 약 **120~360 cm**이다. 선지의 80 cm는 아직 개인적 거리에 해당하며, 400 cm는 사회적 거리의 범위를 넘어선다.

④ X: 공적 거리는 연설이나 강연처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리로, 약 **360 cm 이상**이다. 300 cm는 사회적 거리의 범위에 있으므로 공적 거리의 시작점으로 볼 수 없다.

NoteBase

문 7. 린치(Kevin Lynch)가 제시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다섯 가지 물리적 요소가 아닌 것은?

① 통로(paths)

② 구역(blocks)

③ 결절점(nodes)

④ 랜드마크(landmarks)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린치의 다섯 요소에 포함되는 면적 요소는 **지역(districts)**이다. ②의 '구역(blocks)'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를 뜻하므로 지역과 구별해야 한다.

개념 구분

린치는 사람들이 도시의 모습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물리적 요소를 통로(paths), 경계(edges), 지역(districts), 결절점(nodes), 랜드마크(landmarks)의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통로·결절점·랜드마크는 이 분류에 포함되지만, blocks는 별도의 기본 요소로 제시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역(districts)은 공통된 성격을 지녀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도시의 비교적 넓은 부분이다. 반면 blocks는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여러 가구에 걸친 상업지역을 하나의 특색 있는 영역으로 인식한다면 지역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구역(blocks)'을 린치의 **지역(districts)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NoteBase

문 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은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이란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 관리하는 산림을 말한다.

③ 산림청장은 5년마다 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시숲은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 1번

①

시장은 **매년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계획에는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 ·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 ·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②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한 산림·수목은 **생활숲의 한 종류인 경관숲**이다. 도시숲은 도시에서 **보건·휴양 증진,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경관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NoteBase

③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계획이다. 다만 도지사·구청장·광역시의 군수는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 ·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 ·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의 종류이다. 도시숲의 범위에서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NoteBase

문 9. 조경설계기준 「일반식재기반(KDS 34 30 10 : 2024)」상 조경용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인공토양의 생존최소토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화류: 10 cm 이상

② 소관목: 20 cm 이상

③ 대관목: 30 cm 이상

④ 심근성 교목: 50 cm 이상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50 cm 이상'은 **60 cm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심근성 교목의 인공토양 생존최소토심은 60 cm이다.

선지별 해설

「일반식재기반(KDS 34 30 10 : 2024)」 1.6.3의 표 1.6-1은 식물 종류와 토양 종류별로 생존최소토심을 구분한다. 이 문항에서는 생육최소토심이나 자연토·혼합토의 수치가 아니라 **인공토의 생존최소토심**을 적용한다.

① O: 초화류의 인공토양 생존최소토심은 10 cm이다. 따라서 토양 깊이를 10 cm 이상 확보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일치한다.

② O: 소관목의 인공토양 생존최소토심은 20 cm이다. 따라서 20 cm 이상으로 제시한 수치는 기준과 일치한다.

③ O: 대관목의 인공토양 생존최소토심은 30 cm이다. 소관목의 20 cm와 구분하여 대관목에는 30 cm 이상의 토양 깊이를 확보한다.

④ X: 심근성 교목의 인공토양 생존최소토심은 **60 cm 이상**이다. 50 cm를 최소 기준으로 삼으면 필요한 깊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50 cm 이상'을 '60 cm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 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② 자전거 우선도로
③ 자전거 전용차로
④ 자전거 전용도로

정답 2번

공통 해설

자전거 우선도로는 원칙적으로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천 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과 차로에 설치한다.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함께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노면표시로 설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6.9>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NoteBase

문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① 녹지지역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계획관리지역

정답 4번

공통 해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 중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NoteBase

문 12. 조경설계기준 「잔디 및 초화류식재(KDS 34 40 25 : 2024)」상 잔디 파종 시 단위면적당 적정 파종량(g/m^2)이 가장 많은 것은? (단, 순도와 발아율이 1(100%)이다)

① 크리핑 벤트그래스

② 켄터키 블루그래스

③ 크리핑 레드 훼스큐

④ 페레니얼 라이그래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순도와 발아율이 모두 100%일 때 페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적정 파종량은 **35~45 g/m^2**로, 제시된 네 종류 중 가장 많다.

선지별 해설

KDS 34 40 25 : 2024의 4.2.1(2)④ 및 표 4.2-1은 순도와 발아율이 모두 1(100%)인 경우의 잔디종류별 적정 파종량을 제시한다. 이 문제는 같은 면적 1 m^2에 파종하는 종자의 질량을 비교하므로 표의 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① 크리핑 벤트그래스: 적정 파종량은 **2.5~5 g/m^2**이다. 네 종류 중 가장 적다.

② 켄터키 블루그래스: 적정 파종량은 **5~15 g/m^2**이다. 크리핑 벤트그래스보다 큰 범위이지만 크리핑 레드 훼스큐와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보다 적다.

③ 크리핑 레드 훼스큐: 적정 파종량은 **17.5~22.5 g/m^2**이다. 켄터키 블루그래스보다 많지만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보다 적다.

④ 페레니얼 라이그래스: 적정 파종량은 **35~45 g/m^2**이다. 최솟값인 35 g/m^2도 나머지 세 종류의 최댓값보다 크다.

따라서 제시된 잔디 중 단위면적당 적정 파종량이 가장 많은 것은 ④ 페레니얼 라이그래스이다.

NoteBase

문 13. 건축법령상 건축물에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면적 3천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②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③ 주거지역 내 면적 25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주택

④ 연면적의 합계가 1천400제곱미터인 공장

정답 3번

①

대지면적이 **5천㎡ 미만인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천㎡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26.7.28>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②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26.7.28>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NoteBase

③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는 원칙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주거지역의 250㎡ 대지에 건축하는 주택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례를 고려하지 않으면 대지면적의 10% 이상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2019.3.12>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④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면적 합계가 1,400㎡인 공장은 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26.7.28>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NoteBase

문 14.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유지관리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원시설물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재된 탄소(탄소발자국)가 큰 소재를 우선 선택한다.
ㄴ. 조명시설이나 화장실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원시설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것을 선택하고, 가능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부지 내 제로에너지 달성을 지향한다.
ㄷ. 수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생의 생육여건, 도시공원 이용자 특성 및 탄소흡수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목, 관목 및 지피류로 구성된 다층 식재로 계획함으로써 면적 대비 탄소흡수능을 높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ㄱ

공원시설물은 가능한 범위에서 **내재된 탄소(탄소발자국)가 적은 소재**를 우선 선택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5-1. 도시공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2) 공원시설물의 소재 및 형태, 에너지 사용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재된 탄소(탄소발자국)가 적은 소재를 우선 선택한다.

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원시설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가능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연계하여 부지 내 제로에너지 달성을 지향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5-1. 도시공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2) 공원시설물의 소재 및 형태, 에너지 사용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다) 조명시설이나 화장실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원시설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가능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부지 내 제로에너지 달성을 지향한다.

NoteBase

ㄷ

수종은 가능한 범위에서 **식생의 생육여건, 도시공원 이용자 특성 및 탄소흡수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5-1. 도시공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도시공원 식생의 종류와 식재방식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가) 수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생의 생육여건, 도시공원 이용자 특성 및 탄소흡수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ㄹ

가능한 범위에서 **교목·관목·지피류로 구성된 다층식재**를 계획하여 면적 대비 탄소흡수능을 높여야 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5-1. 도시공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도시공원 식생의 종류와 식재방식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목, 관목 및 지피류로 구성된 다층식재로 계획함으로써 면적 대비 탄소흡수능을 높여야 한다.

NoteBase

문 15. 페리(Clarence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규모에 있어 주거단위는 초등학교 두 개를 유치할 수 있는 인구를 가져야 한다.

② 내부 도로체계는 통과교통 위주의 가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주민의 일상생활 충족을 위하여 소공원과 위락공간 등의 오픈 스페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④ 근린상가는 주구 방문객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페리의 근린주구는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주거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주민의 휴식·놀이·여가 수요를 충족하는 **소공원과 위락공간 등의 오픈 스페이스**는 그 구성 요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근린주구의 인구 규모는 **초등학교 한 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초등학교의 통학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삼는 구상이므로, '초등학교 두 개'를 기준으로 한 설명은 잘못이다.

② X: 내부 도로는 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면서 **통과교통을 억제**하도록 계획한다. 통과교통은 주구 안에 용무가 없이 지나가는 교통으로, 주거환경과 보행 안전을 위해 주구 경계의 간선도로로 우회시킨다. 따라서 내부를 통과교통 위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③ O: 근린주구에는 **주민의 필요에 맞춘 소공원과 위락공간**을 확보한다. 이들 오픈 스페이스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휴식·놀이·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설명에 부합한다.

④ X: 근린상가는 **주구 주민의 일상적인 구매 수요**를 충족하도록 계획하며, 방문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주구 외곽의 교통 결절점에 배치하고 인접 주구의 상가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NoteBase

문 16. 단지계획 수립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조사분석
(나)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
(다) 실시설계 및 집행계획
(라) 목표설정
(마) 기본계획 및 설계

① (가) → (라) → (나) → (마) → (다)
② (가) → (라) → (마) → (다) → (나)
③ (라) → (가) → (나) → (마) → (다)
④ (라) → (가) → (마) → (다) → (나)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단지계획은 먼저 **목표를 정해 조사·분석의 방향**을 잡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구상한다. 대안을 검토하여 기본계획과 설계로 구체화한 뒤, 이를 실제로 구현할 실시설계와 집행계획을 마련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라) → (가) → (나) → (마) → (다)

(라) 목표설정: 단지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계획이 지향하는 상태를 정한다. 이 목표가 이후 **조사 항목과 대안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먼저 설정한다.

(가) 조사분석: 설정한 목표에 비추어 대상지의 자연환경, 주변 토지이용, 이용 수요 등 계획에 필요한 조건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대상지의 제약과 활용 가능성을 파악해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

(나)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시설 배치, 동선 등의 큰 틀을 구상하고 여러 대안을 마련한다. **대안을 비교·검토한 뒤**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로 발전시켜야 하므로 기본계획보다 앞선다.

(마) 기본계획 및 설계: 검토한 대안 중 채택한 안을 토대로 공간 구성과 시설의 위치·규모 등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정리한 계획과 설계가 다음 단계에서 시공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바탕이 된다.

(다) 실시설계 및 집행계획: 기본계획과 설계를 실제 공사로 구현할 수 있도록 상세 도면, 시방서, 공사비 등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의 일정과 방법을 구체화한다. 앞서 정한 공간 구성과 시설 계획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NoteBase

문 17. 조선시대 별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심은 계단식 화계 요소이다.

② 조경은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한다.

③ 정자의 형태는 정면 2칸, 측면 4칸이 기본형이다.

④ 석지, 괴석, 석탑 등을 축조하지 않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조선시대 별서는 기존의 지형·계류·수림을 살리고, 주변 산수와 어울리도록 건물과 정원을 배치하는 **자연 순응적 조경**을 추구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별서의 공간은 **정자·정사와 주변 자연경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자나 정사에서 산수 경관을 감상하고 학문·교유 활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화계는 경사면을 계단 모양으로 정리하여 식물을 심는 시설로 별서에도 쓰였지만, 별서 전체의 중심을 화계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② O: 별서 조경은 **기존의 지형과 물길을 살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를 취한다. 소쇄원처럼 계곡과 지형의 높낮이를 바탕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물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경관을 즐기도록 구성한 것이 그 예이다.

③ X: 정자의 평면과 칸수는 입지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므로 **정면 2칸·측면 4칸을 기본형으로 정할 수 없다**. 별서정원인 담양 명옥헌의 정자는 정면 3칸·측면 2칸이다. 선지처럼 특정 칸수를 별서 정자의 공통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 잘못이다.

④ X: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은 **석조 시설을 전혀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별서에서는 연못의 석축과 자연석 등도 조경 요소로 활용하였다. 영양 서석지에는 돌로 쌓은 연못 벽과 연못 쪽으로 돌출된 석단이 있고, 물속의 암반도 감상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돌을 이용한 시설이나 경관 요소를 조성·활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의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	세부내용
도시의 개발	(가) 이상	구도심개발사업
	40 이상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나) 이상	매립시설
	40 이상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① (가): 30, (나): 50

② (가): 30, (나): 60

③ (가): 50, (나): 50

④ (가): 50, (나): 60

정답 1번

가

도시의 개발 중 구도심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는 **30 이상**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ed3bLXQMeQQ4NBOuu9GHCuWNSyZISs-o.webp

나

매립시설의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는 **50% 이상**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0l7Y38mNv_PVNeqnSxmYcwsBw-K1ZDfK.webp

NoteBase

문 19. 조선시대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 방위에 따른 조경식물 중 북쪽에 심는 것을 권장하는 식물로만 나열한 것은?

① 복숭아나무, 회화나무

② 대추나무, 치자나무

③ 느릅나무, 벚나무

④ 동백나무, 오얏나무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산림경제』에서 **느릅나무와 벚나무**는 모두 북쪽에 심도록 권장한 수종이다.

핵심 풀이

북쪽 권장 수종: 『산림경제』의 방위별 식재에서 **느릅나무와 벚나무**는 북쪽에 심기 좋은 수종에 포함된다. 따라서 두 나무를 묶으면 '북쪽에 심는 것을 권장하는 식물로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

느릅나무의 방위: 느릅나무는 **서쪽과 북쪽 모두**에 권장된다. 방위별 권장 수종은 서로 배타적인 목록이 아니므로, 서쪽 권장 수종이라는 사실이 북쪽 식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른 수종과의 구분: 복숭아나무는 동쪽, 대추나무는 남쪽, 치자나무는 서쪽의 권장 수종으로 제시된다. 특히 **치자나무·동백나무·오얏나무는 북쪽 식재를 피하는 수종**이므로 북쪽 권장 수종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20. 신선사상에 따라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의 3개 섬으로 상징화된 삼신선도(三神仙島)가 연출된 전통 조경공간이 아닌 것은?

① 영양 서석지 삼도
② 경주 월지 삼도
③ 남원 광한루지 삼도
④ 경복궁 경회루지 삼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서석지는 연못 속의 **자연 암석인 서석과 사우단**이 특징인 정원이다. 봉래·방장·영주를 상징하는 세 섬을 조성한 삼신선도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삼신선도는 신선이 산다고 여긴 봉래·방장·영주의 삼신산을 연못 속 세 섬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각 정원에 이러한 삼도 구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① X: 영양 서석지는 삼신산을 상징하는 세 섬을 조성한 정원이 아니다. 연못에 원래 있던 **자연 암석인 서석**을 살리고, 주일재 앞에서 연못 쪽으로 내민 단에 소나무·대나무·매화·국화를 심어 사우단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서석지 삼도'라는 연결은 서석과 사우단을 중심으로 한 정원 구성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② O: 경주 월지에는 **삼신산을 상징하는 세 섬**이 조성되어 있다. 연못을 바다에, 그 안의 섬들을 신선이 사는 산에 대응시켜 신선의 세계를 정원에 표현한 사례이다.

③ O: 남원 광한루지에는 **봉래·방장·영주라는 세 섬**이 조성되어 있다.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섬으로 구체화하였으므로 삼신선도가 연출된 조경공간에 해당한다.

④ O: 경복궁 경회루지는 **경회루가 세워진 큰 섬과 서쪽의 작은 섬 두 개**로 삼도를 이룬다. 이 세 섬의 구성은 삼신산을 상징하는 삼신선도의 사례에 해당한다.

NoteBase